[2022-31] ○○○이의신청 요약 ('22. 9. 22. 결정)

사실 관계

○ 2000.00.00 신청인, 경상북도 ●●군 ●●면 ●●로 ●●●-●●번지 소재의 ㈜●●●●●●의 불법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지방세 탈세 현황을 국민신문고에 제보

○ 2000.00.00. 처분청, 접수 8일 후 추징계획을 청구인에게 통지, 해당법인 탈세액을 추징

○ 2000.00.00. 신청인, 처분청에 장수 완납을 확인 후 포상금 청구 → 2000.00.00. 처분청, 포상급 지급 거부처분

○ 2000.00.00. 신청법인, 이의신청 제기

쟁점 사항

○ 탈세제보에 따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

신청인 주장

○ 동종의 제품을 생산, 판매하는 사업을 승계할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액을 감면 받았던 해당법인에 대한 신청인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지방세를 추징하였으므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종합판단 : 기 각

○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6조 제1항 제1호에서 "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·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**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**"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여기서 **중요한 자료라 함은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·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,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, 거래품목,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**를 의미하며,

○ 탈세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자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"중요한 자료"를 제공함으로써 **과세관청 입장에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보다 수월하게 탈루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비용 절감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**(대법원 2011.4.14. 선고 2011두 1030 판결)인 바,

○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주된 업종 판단이 어려워 해당 법인과 직접 연락 후 탈루 사실을 확인한 후 지방세를 추징한 점, 제공한 자료 대부분을 법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,

○ **신청인이 제공한 자료는 "중요한 자료"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신청인에게 탈세제보에 따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**한 것으로 판단된다.